

종 법(宗法)

의제법

제23조 이법은 승려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승가의 품위보전을 목적으로 제정한다.

제24조 이법에서 의제라 함은 승니가 수행 및 전법 활동과 일상생활에 착용하는 일체의 의복에 대한 제도를 말한다.

제25조 본종의 의제는 법복과 평상복으로 구분한다.